

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17
----------	------

2020년 12월 16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6일
3. 상정일자 : 제298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0년 11월 30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김기현)

1. 제안이유

-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종로구, 서대문구 권역 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 접근성과 안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소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,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·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 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

- 이에,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기획·운영하고, 지역 내 아이 돌봄 기관·자원의 수평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
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사직로8 (교북동 126-2)
- 규모 : 지상 2층~6층 / 연면적 1,480.07m²
- 준공일 : 2021. 5월(예정)
- 공간구성(안)

구분	면적(m ²)	용도
6층	238	상담실, 사무공간, 강사대기실, 회의실
5층	238	다목적 활동 공간(전시, 공연, 체육, 종사자교육 등)
4층	238	문·예·체 등 체험형 프로그램실, 메이커스실, 교재교구실
3층	238	요리교실, 크리에이터실, 휴식 및 오픈형 놀이공간
2층	238	안내, 오픈형 놀이공간, 독서·휴식공간, 보호자 대기공간

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위탁기간 : 5년(2021. 5. ~ 2026. 4.)
- 위탁유형 : 시설위탁
-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조직운영(안) : 4팀, 18명(정원)

센터장(1)
운영총괄

행정운영팀(6명)	돌봄기획팀(4명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조정 및 운영 총괄 - 조직, 인사, 예산·결산, 지출, 총무 -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- 전기·통신·기계 시설물 유지보수, 차량운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콘텐츠 기획, 개발 총괄 - 문·예·체 창의체험활동 콘텐츠 기획, 개발 - 지역돌봄기관, 지역주민 지원콘텐츠 기획, 개발 -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기획
돌봄운영팀(4명)	돌봄연계팀(3명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·예술·체육, 놀이중심 체험활동 운영 - 지역주민 대상 활동 운영 -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- 돌봄자원(인적·물적) 연계 및 인프라 구축 -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지원

※ 「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조성·운영 TF」를 통해 세부 조직구성, 직무분석안 마련 예정

○ 위탁사무 내용

-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
-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·물품 관리
 -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
 -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
 -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
 - 권역 내(종로, 서대문)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연계기반 마련
 -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
 -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 -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
 -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사업 추진 관련 업무 협조
- '21년 소요예산(안) : 794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
다. 추진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「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」 (시장방침 제33호, '19.3.6.)
- 「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·운영계획」 (아이돌봄담당관-5538, '19.4.29.)

- 「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 추진계획」(아이돌봄담당관-14991, '19.11.22.)
- 「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확대 계획」(아이돌봄담당관-2312, '20.2.14.)
- 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수행 지자체 사전선정 통보 (인구정책총괄과-3573, '20.8.10.)
- 「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」(아이돌봄담당관-11447, '20.8.20.)
- 2020년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(조직담당관-11253, '20.9.24.)

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,000㎡ 이상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로 10~25명 수준의 인력관리 및 초등학생 대상 문화·놀이·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,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·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3.18, 2009.7.30, 2014.5.14>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민간위탁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‘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’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1항¹⁾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,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.
-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 - 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·물품 관리
 - 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
 - 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
 - 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
 - 권역 내(종로, 서대문)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연계기반 마련
 -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
 -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 -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
 -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사업 추진 관련 업무 협조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거점형 키움센터(이하 “거점센터”라 함)’는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) 및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제5호3)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아동 대상 돌봄 시설의 하나로 일반형 및 융합형 키움센터와 연계한 특화 예술 프로그램 제공, 주말·저녁시간 등에 틈새·긴급돌봄 공급 및 지역 내 돌봄 거점으로서, 중·소규모 돌봄기관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

<키움센터 유형별 기능 및 역할>

	(국시비 매칭, 3:7)	(전액 시비투자, 서울形 모델)	
	일반형 키움센터	융합형 키움센터	거점형 키움센터
기능 및 역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집·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• 틈새돌봄 수요와 접근성 중시 • 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과 연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아동센터와 협업·상생모델 • 마을권역별 돌봄거점 역할 수행 • 긴급주말돌봄 강화, 급식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대표 특화 돌봄 서비스 제공 • 문화·예술·체육, 부모교육 강화 • 일반형·융합형 단점 보완지원
면적	66㎡ 이상 (小규모, 구립)	210㎡ 이상 (中규모, 구립)	1,000㎡ 이상 (大규모, 시립)

- 2)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 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 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 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 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- 3)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돌봄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,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
 5. 시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대상 방과후 돌봄,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

- 동 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업은 순수 시비 지원으로 거점센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시 설 명	제3호 거점형 키움센터
소 재 지	서울 종로구 사직로8 (교북동 126-2)
규 모	지상 2층~6층 / 연면적 1,480.07㎡
준공예정일	2021. 5월(예정)
위 탁 사 무	제3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전반
위 탁 기 간	2021. 5월 ~ 2026. 4월(5년간)
조직운영(안)	4팀, 18명 (센터장 1, 종사자 17)
'21년 예산(안)*	1,353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수탁체 선정	공개모집

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⁴⁾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⁵⁾ 및 「서울특별시 운

4)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5)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
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1항6)에 시장이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하고 있는 바, 방과후 초등돌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 거점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,

- 「민간위탁조례」제4조7)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 - 문화·예술·체육 전문 프로그램 제공 및 부모 상담, 일반형·융합형 센터를 포함한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-
- 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 - 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 -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6)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7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삭제
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⁸⁾에서 돌봄시설을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,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4 종합 검토 의견

- 금번 시장이 제출한 위탁사무에 대한 동의안은 초등 방과후 돌봄 시설 중 문화·예술·체육 전문 프로그램 제공 및 부모 상담, 일반형·융합형 센터를 포함한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.
- 이에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임.
- 다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, 22년까지 25개의 거점형 키움센터 확충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차방식으로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 과도한 임차료가 발생⁹⁾하고 있으며, 센터이용시간¹⁰⁾이 아닌 오전시간에 공간활용의 비효율 발생, 업무량에 비해 과

8)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9) 3호센터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2021년 임차료는 총 4억 797만원에 달함.

다한 인력배치(20명 내외), 융합형 센터와 총괄/조정 기능 중복, 지역을 아우르지 못하는 센터 위치¹¹⁾, 1호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음에도 매뉴얼도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바,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.

10)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13시~21시, 방학 8시~21시임.

11) 도봉/노원권의 1호센터의 경우, 센터가 위치한 노원구에 설치신고가 되어 노원구의 행정권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, 키움센터 및 돌봄시설의 공급 역시 노원이 주도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도봉과의 협업이나 이용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1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종로구, 서대문구 권역 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 접근성과 안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소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,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·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 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
- 나. 이에,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기획·운영하고, 지역 내 아이 돌봄 기관·자원의 수평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
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사직로8 (교북동 126-2)
- 규모 : 지상 2층~6층 / 연면적 1,480.07㎡
- 준공일 : 2021. 5월(예정)

○ 공간구성(안)

구분	면적(m ²)	용도
6층	238	상담실, 사무공간, 강사대기실, 회의실
5층	238	다목적 활동 공간(전시, 공연, 체육, 종사자교육 등)
4층	238	문·예·체 등 체험형 프로그램실, 메이커스실, 교재교구실
3층	238	요리교실, 크리에이티브실, 휴식 및 오픈형 놀이공간
2층	238	안내, 오픈형 놀이공간, 독서·휴식공간, 보호자 대기공간

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위탁기간 : 5년(2021. 5. ~ 2026. 4.)
- 위탁유형 : 시설위탁
-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조직운영(안) : 4팀, 18명(정원)

센터장(1)
운영총괄

행정운영팀(6명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조정 및 운영 총괄 - 조직, 인사, 예산·결산, 지출, 총무 -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- 전기·통신·기계 시설물 유지보수, 차량운행

돌봄기획팀(4명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콘텐츠 기획, 개발 총괄 - 문·예·체 창의체험활동 콘텐츠 기획, 개발 - 지역돌봄기관, 지역주민 지원콘텐츠 기획, 개발 -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기획

돌봄운영팀(4명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·예술·체육, 놀이중심 체험활동 운영 - 지역주민 대상 활동 운영 -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운영

돌봄연계팀(3명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- 돌봄자원(인적·물적) 연계 및 인프라 구축 -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지원

※ 「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조성·운영 TF」를 통해 세부 조직구성, 직무분석안 마련 예정

○ 위탁사무 내용

-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·물품 관리
-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
-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
- 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
- 권역 내(종로, 서대문)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연계기반 마련
-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
-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-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
-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사업 추진 관련 업무 협조

○ '21년 소요예산(안) : 794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
다. 추진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「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」 (시장방침 제33호, '19.3.6.)
- 「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·운영계획」 (아이돌봄담당관-5538, '19.4.29.)
- 「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 추진계획」 (아이돌봄담당관-14991, '19.11.22.)
- 「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확대 계획」 (아이돌봄담당관-2312, '20.2.14.)
- 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수행 지자체 사전선정 통보(인구정책총괄과-3573, '20.8.10.)
- 「제3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」 (아이돌봄담당관-11447, '20.8.20.)
- 2020년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(조직담당관-11253, '20.9.24.)

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,000㎡ 이상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로 10~25명 수준의 인력관리 및 초등학생 대상 문화·놀이·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,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·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아동복지법 제44조의2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예산반영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이다림(☎ 2133-7152)